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내 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며, 보조금으로 적립된 퇴직적립금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¹⁾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합동 감사기간(2018. 2. 26. ~ 3. 16.) 중 울산광역시의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라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시행 2015.12.24.)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울산광역시 장애인 체육관’ 등 10개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 등 14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한 퇴직적립금 8,665,887원을 기한 내에 반환 받지 않았다.

[표]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구/군	시설명	시설종류	퇴직자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미환수 퇴직적립금
계		10개 시설		14				8,665,887
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체육관	○○○○○ ○○○○○시설	○○○		2013-09-01	2014-06-30	1,523,267
2	중구	○○어린이집	어린이집	○○○		2015-05-01	2016-02-29	1,150,550
3	중구	○○어린이집	어린이집	○○○		2014-07-02	2014-12-31	587,650
4	중구	○○어린이집	어린이집	○○○		2014-03-01	2014-08-08	517,760
5	중구	○○어린이집	어린이집	○○○		2014-03-01	2014-07-01	431,110
6	중구	○○어린이집	어린이집	○○○		2014-09-01	2015-01-31	417,790
7	남구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2016-07-08	2016-12-31	817,330
8	남구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2014-07-02	2014-09-30	320,030
9	남구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2014-10-24	2015-01-31	320,000
10	남구	○○○○○○○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2016-01-01	2016-05-13	316,280
11	동구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2014-01-01	2014-04-30	457,780
12	북구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재가노인복지시 설	○○○		2016-07-01	2016-12-31	931,180
13	북구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2014-03-03	2014-09-30	575,160
14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2015-04-01	2015-07-01	300,000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시정] 근무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반환 퇴직적립금 1,523,267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

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은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반환 퇴직적립금 3,104,86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은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반환 퇴직적립금 1,773,64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은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반환 퇴직적립금 457,78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은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반환 퇴직적립금 1,506,34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수는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반환 퇴직적립금 300,000원을 환수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